

 에경케미칼(주)	규정명	사규번호 : 제정일자 : 2022. 12. 23. 개정일자 : 2024. 05. 01. 개정번호 : 1	페이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2 / 10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에경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를 위하여 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라 함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경쟁당국 소관 법규, 시행령, 고시 및 지침 등을 총칭한다.
3. "경쟁당국"이라 함은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라 한다.)"이라 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기준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회사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라 함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자율준수전담팀"이라 함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 아래 CP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CP 실시책임자"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리스크가 있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해당 부서의 자율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부서별 자율점검"이라 함은 CP 실시책임자가 해당 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존재여부 및 CP의 적절한 운영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에경케미칼(주)	규정명	사규번호 : 제정일자 : 2022. 12. 23. 개정일자 : 2024. 05. 01. 개정번호 : 1	페이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3 / 10

9. "CP 모니터링"이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에 따라 자율준수전담팀이 회사 내 타 부서에 대하여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CP 가 기준과 절차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정규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1. "제재" 또는 "제재조치"라 함은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본 규정 제 21 조에 따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12. "포상"이라 함은 회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행위로 회사의 이익증진 또는 손실방지에 기여하거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확산에 공헌한 임직원에게 실시하는 조치로, 임직원에게 자율준수에 대한 자긍심과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준수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 및 업무

제 1 절 대표이사

제 4 조 대표이사의 역할

-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율준수 기능 및 CP 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며, 자율준수가 회사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자율준수 활동에 대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 2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5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과 해임

- ① 회사는 CP 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임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한다.

 에경케미칼(주)	규정명	사규번호 : 제정일자 : 2022. 12. 23. 개정일자 : 2024. 05. 01. 개정번호 : 1	페이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4 / 10

- ④ 자율준수관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결로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자율준수전담팀장이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6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 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본 조 제 3 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④ 회사는 본 규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 7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사의 자율준수 및 CP 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2. CP 운영과 관련한 계획,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조치, 예방조치의 강구
 4.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심의 및 인사위원회 상정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정책, CP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
 6. 경쟁당국 관련 대관 업무
 7. 기타 임직원의 자율준수와 CP 운영을 위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 1 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가지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조사권
 2.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시정 요구권
 4. 인사위원회 개최 소집권
 5. 기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자율준수전담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규정명	사규번호 : 제정일자 : 2022. 12. 23. 개정일자 : 2024. 05. 01. 개정번호 : 1	페이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5 / 10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 모색 등을 위해 외부 법률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제 3 절 자율준수전담팀의 역할

제 8 조 자율준수전담팀의 업무 및 권한 등

- ① 자율준수전담팀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보좌하여 회사의 자율준수 및 CP 에 관한 실무를 주관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CP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의 수립, 운영
 2. CP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
 3. CP 모니터링 실시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절차의 개선
 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임직원 법률자문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정책, CP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 운영
 7. 부서별 자율점검 요청 및 지도·지원
 8. 자율준수편람, 자율준수에 관한 업무기준·가이드라인 등의 작성 및 배포
 9. 경쟁당국과의 소통 및 조사, 자료요청 등에 대한 대응
 10. 제 1 호 내지 제 9 호의 운영계획, 결과 등에 관한 자율준수관리자·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보고
 11.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자율준수전담팀의 독립성 보장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절 현업부서 및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무

제 9 조 CP 실시책임자의 업무 및 역할

- ① CP 실시책임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부서 내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 업무와 관련한 CP 의 적절한 운영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자율점검
 2. 제 1 호의 점검에 따른 개선·시정조치의 이행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의 변경에 따른 해당 부서 업무의 프로세스 변경

 에경케미칼(주)	규정명	사규번호 : 제정일자 : 2022. 12. 23. 개정일자 : 2024. 05. 01. 개정번호 : 1	페이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6 / 10

4. 자율준수 및 CP 관련 소속 부서원 교육참여 독려 및 관리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보고
 6. CP 운영에 관한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전담팀의 업무에 대한 협조
 7. 제 1 호 내지 제 6 호 관련 내용의 기록 및 유지
 8. 기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전담팀이 요청하는 사항
- ② CP 실시책임자는 업무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자율준수전담팀에 보고한다.

제 10 조 임직원의 의무

- 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규정, 지침·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하여서는 안된다.
- ②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내용·해석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율준수전담팀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정 또는 위반 소지를 인지한 즉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전담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다른 임직원이 위반하는 행위를 묵인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임직원은 경쟁당국으로부터 서면 또는 직권조사, 분쟁조정, 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을 수신한 경우 지체 없이 자율준수전담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CP 운영에 따른 정기 및 비정기적 점검에 적극 응해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전담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자율준수전담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CP 의 운영

제 11 조 자율준수의지 선언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 ②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와 방침은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임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공지되어야 한다.

제 12 조 CP 운영계획의 수립

- ① 자율준수전담팀은 매년 1 분기 내에 해당 연도의 CP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득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에경케미칼(주)	규정명	사규번호 : 제정일자 : 2022. 12. 23. 개정일자 : 2024. 05. 01. 개정번호 : 1	페이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7 / 10

- ② 자율준수전담팀은 해당 연도의 CP 운영계획 수립 시 전년도 CP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시정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을 적절히 반영한다.

제 13 조 CP 모니터링 실시

- ① 자율준수전담팀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임직원의 자율준수 실태 등에 대한 CP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자율준수전담팀은 CP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CP 모니터링 실시 전 관련부서에 대하여 CP 모니터링의 목적 및 범위, 세부 계획 등에 대하여 고지한다.
- ③ 자율준수전담팀은 CP 모니터링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각종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임직원 면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자율준수전담팀은 CP 모니터링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련부서에 위반사항을 설명하고, 업무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관련부서의 CP 실시책임자는 CP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CP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자율준수전담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부서별 자율점검

- ① CP 실시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 시 자율준수편람 등을 활용하여 CP 준수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 ② CP 실시책임자는 자율점검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이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자율준수전담팀을 통해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 ③ CP 실시책임자는 자율준수전담팀의 요청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준수전담팀에게 보고한다.
 1. 부서 내 CP 기준·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2. 자율준수전담팀으로부터 부여 받은 부서 내 CP 활동목표 이행 여부 및 달성 수준
 3. 부서 내 자율준수편람 등 배포 및 활용 실적
 4. 기타 자율준수전담팀에서 요청한 사항

제 15 조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에경케미칼(주)	규정명	사규번호 : 제정일자 : 2022. 12. 23. 개정일자 : 2024. 05. 01. 개정번호 : 1	페이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8 / 10

- ③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 또는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 ④ 자율준수전담팀은 자율준수편람 이외에도 임직원의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정한 업무기준·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 16 조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 ① 자율준수전담팀은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자율준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 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주요 사항 및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하며, 기타 CP 운영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다.
- ③ 자율준수전담팀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을 의무 수강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 ④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임직원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은 자율준수전담팀이 회사 교육 플랫폼에 게시한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 ⑤ 자율준수전담팀은 전문 지식, 관련 업무경험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강사로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무법인, 전문기관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자율준수전담팀은 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에 대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 17 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

- ① 자율준수전담팀은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접수된 내부제보에 대한 실제 조사 업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 ② 자율준수전담팀은 내부제보 접수 후 이를 감사부서에 전달하며, 감사부서는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즉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전담팀에게 보고한다.
- ③ 회사는 내부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신분 누설, 보복, 색출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어떠한 인사상·업무상의 불이익도 주지 않아야 한다. 단, 고의로 허위의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CP 운영성과 평가

 에경케미칼(주)	규정명	사규번호 : 제정일자 : 2022. 12. 23. 개정일자 : 2024. 05. 01. 개정번호 : 1	페이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9 / 10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성과의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9 조 CP 운영현황 보고

자율준수전담팀은 CP 운영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 20 조 CP 운영상황의 공개

- ① 회사는 자율준수에 대한 회사의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CP 와 관련한 운영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CP 운영실적 등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의 운영상황을 홈페이지 또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자율 공시할 수 있다.

제 4 장 제재 및 포상

제 21 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① 회사는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본 규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제재조치의 대상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 이외에,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권유하거나 인정한 행위도 포함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부서별 자율점검 또는 CP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일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인사위원회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준을 정하고, 제재조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 22 조 면책의 제한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
2.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해 위반하려는 의도 내지 고의가 없었던 것
3.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였다는 것

 에경케미칼(주)	규정명	사규번호 : 제정일자 : 2022. 12. 23.	페이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일자 : 2024. 05. 01. 개정번호 : 1	10 / 10

제 23 조 포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였다고 평가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② 인사부서는 제 1 항에 따라 추천 받은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22. 12. 23>

이 규정은 2022 년 12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4. 05. 01>

이 규정은 2024 년 5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